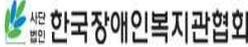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21. 5. 25.



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유전열

전화 051-606-4164

제 목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형사사법 지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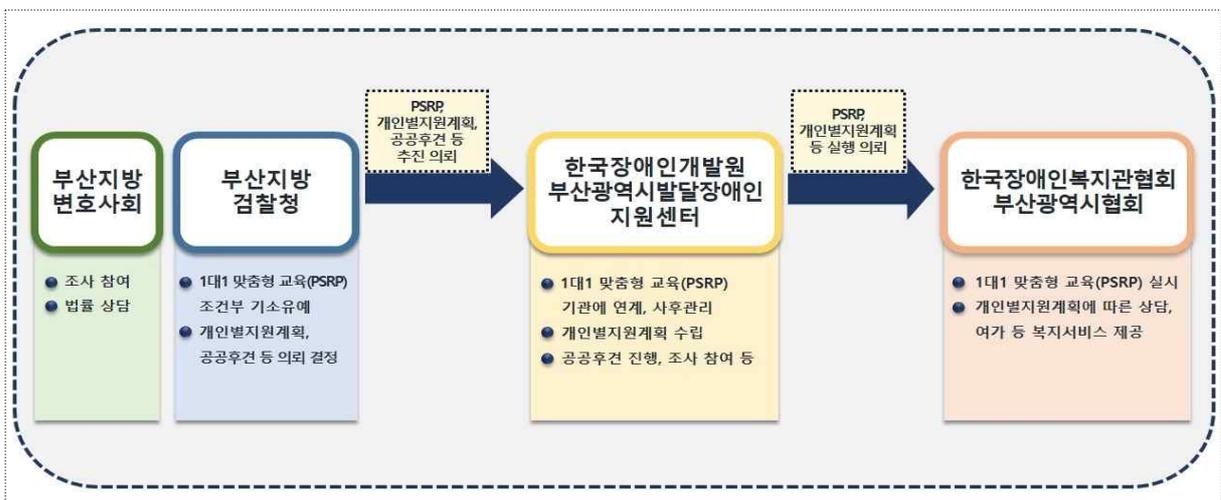
- “수사 시작부터 종결 후 자립까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 한국 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원장 최경숙, 센터장 현광희), 한국 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광역시협회(회장 이재영)는 2020. 11.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 피의자와 피해자 17명에게 장애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하였음
- 수사를 받는 발달장애 피의자에 대하여는
 - ▶ 조사시 전담변호사나 전문가가 동석해 피의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 범죄 내용과 발달장애인 특성에 따라 1대1 맞춤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여 실질적 재범 방지를 도모하였음(총 9명)
 - ※ 1대1 맞춤형 교육·상담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고, 교육 종료 후에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학생 멘토링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
- 범죄피해를 당한 발달장애 피해자에 대하여는
 - ▶ 피해회복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상담·치료·여가·취업 등을 장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 금융거래 등 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공후견’도 진행하였으며, ▶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모 상담 및 교육’도 진행하였음(총 8명)
 - ※ ‘공공후견’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인(금융거래 등 특정 사무를 후원)을 선임하고 선임청구 비용과 후견인 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임
- 앞으로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I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지원 추진 경과

-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광역시협회는 2020. 1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게 총 17명의 발달장애 피의자와 피해자를 지원하였음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도>



II 발달장애인 피의자 지원 사례

- 지원 개요
 - 발달장애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시 피의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변호사회 전담변호사 또는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문가가 조사 참여, 법률 상담을 해 주었고, ▶수사 종결 후 맞춤형 1대1 교육(PSRP)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실질적인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등 총 9명을 지원하였음
 - ※ PSRP(Personalized Support for Recidivism Prevention)란 범죄 가해·피해 장애인을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장애 특성으로 인해 범죄 가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맞춤형 교육·훈련 진행

● 구체적인 지원 사례

- 지적장애 피의자가 허위 112 신고를 반복한 사건에서 ▶**신고행위의 파급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상담·교육**하고 ▶**적절하게 감정을 표출하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연계하였음
-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는 ▶**피의자 검찰조사시 전문가가 동석**하고 전담변호사도 **법률상담**을 해 주고 ▶**피의자 교육시 역할극이나 그림카드**를 활용해 피해자 입장을 쉽게 공감하도록 하고 ▶**교육 장소로 이동시 동행할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선정해 줌은 물론 ▶**교육 종료 후에도 대학생 멘토링**을 받도록 하는 등 **사건 내용과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재범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발달장애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아닌 기소 처분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병행함
- ※ 맞춤형 교육을 통해 ‘행동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났다’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음

III

발달장애인 피해자 지원 사례

● 지원 개요

- 발달장애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워 생애주기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상담·진료·여가·취업 등을 안내·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범죄피해를 당한 분야의 업무를 도울 후견인**을 선임하는 **‘공공후견’**을 진행하였으며, ▶**가정 내 사건의 경우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모 상담 및 교육’**을 활용하는 등 총 8명을 지원하였음
- ※ ‘개인별지원계획’이란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장애등록을 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은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부산은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지원받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지원 사례

- 지적장애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하여 ▶발달장애 이해를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위주로 피해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재활치료를 위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였음
- 지적장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개통 후 요금을 연체시켜 부모와 갈등이 있어 온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줄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공공후견'을 진행하고
- 지적장애 피해자가 가출 후 비장애인 권유로 거액을 대출받은 사건에서는 ▶금융거래 사무를 도울 특정후견인을 선임을 위한 '공공후견'을 진행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음

IV 향후 계획

- 검찰과 전문기관 등은 향후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함은 물론 형사사법절차 종료 이후에도 범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계속할 예정임 ☑

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사건(제10조 제1항 제2호)
-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 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